의안번호	2209669
의 뢰 인	오기형의원
회 답 일	2025.5.14.
추계번호	25D21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4억 2,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 5,300만원(연평균 95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9,423	9,211	9,437	9,671	9,912	47,653	9,531

주: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 (기획예산처) 및 안 제27(재정경제부)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보함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2조의2 (기획예산처) 및 안 제27(재정경제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조직 구성·운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제를 마련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정원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인력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가정함

○ 현 기획재정부의 부총리 겸임 및 복수차관 구성은 재정경제부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처 장관 1명과 차관 1명 및 각 비서실 직원의 증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타 부처 사례를 참고하여 장관실 증원 7명(고위 1명, 4급 2명, 7급 2명, 9급 2명), 차관실 증원 3명(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소관 사무를 현재 수행 중인 인원은 해당 부처로 승계된다고 가정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의 재정경제부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624명이고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315명임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른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 수행 인원

○ 부처 신설에 따라 기획·인사·감사·계약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데,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유사한 인력 규모를 가진 부처의 행정지원조직 비율을 준용하여 증원 인원을 산출

- 재정경제부의 경우 사업부서 인원 624명과 유사한 규모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원조직 비율 17%를 적용하고, 기획예산처의 경우 사업부서 인원 315명과 유사한 규모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의 행정지원조직 비율 평균인 22%를 적용[1)]

[표 2] 행정지원조직 증원 필요 인원

(단위: 명)

개정안에 따른 필요 인원			현 기획재정부 행정지원조직 인원 (D)	증원 필요 인원 (C−D)
재정경제부 필요 인원(A)	기획예산처 필요 인원(B)	소계 (C=A+B)		
128	84	212	137	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증원되는 행정지원조직 75명은 현 기획재정부 행정지원조직의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추어 배분

[표 3] 증원되는 행정지원조직의 직급별 배분(안)

(단위: 명)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3	4	10	19	17	14	5	3	75

주: 기획재정부 행정지원조직의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추어 배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앞선 가정에 따라 증원되는 기획예산처 장관, 차관 및 행정지원조직 인원 등의 사무공간은 세종청사 내 유휴공간과 기존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증원에 따른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1) 부처의 행정지원조직 인원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2023.10.) 참고

❑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2)]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 (장관 및 차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장관의 연봉액은 1억 4,969만원, 차관의 연봉액은 1억 4,538만원으로 연봉액에 각종 수당을 합산

[표 4] 장관 및 차관 보수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장관	149,692	17,040	14,880	1,680	480	166,732
차관	145,378	13,560	11,400	1,680	480	158,938

주: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행정지원조직 등 보수) 장관 및 차관 비서실 증원인력을 포함한 행정지원조직 등(이하 “행정지원조직”이라 한다)의 보수는 2025년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을 합산하여 1인당 보수를 산출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4.)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행정지원조직 1인당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고위공무원	132,646	9,960	7,800	1,680	480	142,606
3급	97,256	8,160	6,000	1,680	480	105,416
4급	96,250	6,960	4,800	1,680	480	103,210
5급	66,683	5,160	3,000	1,680	480	71,843
6급	52,520	4,380	2,220	1,680	480	56,900
7급	45,283	4,320	2,160	1,680	480	49,603
8급	44,024	4,260	2,100	1,680	480	48,284
9급	29,302	4,260	2,100	1,680	480	33,562

주: 1.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2.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3. 고위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202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수 총액) 추계의 전제에 따라 장관 1명, 차관 1명 및 행정지원조직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

[표 6] 보수 총액: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총액 (=직급별 1인당 보수×인원)	장관	1명	171	175	179	183	188	896
	차관	1명	163	167	171	175	179	854
	고위공무원	4명	584	598	612	627	642	3,064
	3급	4명	432	442	453	464	475	2,265
	4급	12명	1,268	1,299	1,330	1,362	1,394	6,653
	5급	20명	1,471	1,507	1,543	1,580	1,618	7,718
	6급	17명	991	1,014	1,039	1,064	1,089	5,196
	7급	17명	863	884	905	927	949	4,530
	8급	5명	247	253	259	265	272	1,297
	9급	6명	206	211	216	221	227	1,082
	합계	87명	6,396	6,550	6,707	6,868	7,033	33,55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

[표 7]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관부담금	836	860	885	912	941	4,4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원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79억 8,900만원으로 추계

[표 8] 인건비(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6,396	6,550	6,707	6,868	7,033	33,554
기관부담금	836	860	885	912	941	4,434
합계	7,232	7,410	7,592	7,781	7,974	37,989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본경비

❑ 202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24.3%[3]를 앞서 추정된 인건비 총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 산출

❑ 추계 결과, 기본경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92억 3,100만원으로 추계

[표 9] 기본경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경비	1,757	1,801	1,845	1,891	1,938	9,231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중 기본경비를 인건비로 나누어 산출

다. 자산취득비

❑ 증원인원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 1인당 498만원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활용

❑ 추계 결과,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4억 3,300만원으로 추계

[표 10] 자산취득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자산취득비	433	-	-	-	-	4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4억 2,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76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인건비	7,232	7,410	7,592	7,781	7,974	37,989
기본경비	1,757	1,801	1,845	1,891	1,938	9,231
자산취득비	433	-	-	-	-	433
합계	9,423	9,211	9,437	9,671	9,912	47,653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현 기획재정부 기준 개정안에 따른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소관 사무 수행 인원

재정 경제부 (624명)	담당 사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사무
	○ 세제실(132명) – (고위가 1, 고위나 5, 3·4급 5, 4급 10, 4·5급 13, 5급 57, 6급이하 41) ○ 차관보(1명), 경제정책국(63명), 정책조정국(51명), 경제구조개혁국(44명) – (고위가 1, 고위나 5, 3·4급 3, 4급 15, 4·5급 19, 5급 78, 6급이하 38) ○ 국고국(71명) – (고위나 2, 3·4급 2, 4급 6, 4·5급 8, 5급 26, 6급이하 27) ○ 국제경제관리관(1명), 국제금융국(49.5명), 대외경제국(51명), 개발금융국(41.5명) – (고위가 1, 고위나 4, 3·4급 5, 4급 11, 4·5급 14, 5급 70, 6급이하 38) ○ 경제공급망기획관(20명) – (고위나 1, 4급 2, 4·5급 1, 5급 13, 6급이하 3) ○ 공공정책국(64명) – (고위나 2, 3·4급 2, 4급 6, 4·5급 7, 5급 27, 6급이하 20) ○ 미래전략국(35명) – (고위나 1, 3·4급 2, 4급 2, 4·5급 6, 5급 16, 6급이하 8)	
기획 예산처 (315명)	담당 사무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
	○ 예산실(198명) – (고위가 1, 고위나 5, 3·4급 6, 4급 17, 4·5급 22, 5급 91, 6급이하 56) ○ 재정관리관(1명), 재정정책국(46명), 재정관리국(70명) – (고위가 1, 고위나 4, 3·4급 3, 4급 9, 4·5급 12, 5급 56, 6급이하 32)	

자료: 행정안전부